



환경관련질의응답

비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

Q

당사는 현재 폐가스 세정시설(폐수량 0.75m³/일)을 허가 득하여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금번에 당사에 이화학시험시설 면적 70m²이 증설하고자 하며 이때 발생 예상되는 폐수 0.5m³/일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A

질의 내용의 이화학시험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 “79. 이화학시험시설(면적 100m²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귀 사업장은 폐가스 · 세정시설(폐수량 0.75m³/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으로 이화학시험시설 폐수도 위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 ·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독물 영업자의 책무 중 종업원의 교육 실시 규정

Q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2호의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면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민간 및 공공 실험실에는 순수 연구용, 검사용 목적으로 시약(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 제5조 (영업자의 책무)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만약의 실시하여야 한다면 시약의 경우 수백 종류를 취급하고 있는 경우,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대한 교육을 하여야만 하는지?

또, 이때의 교육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만, 시약의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각 화학물질의 대한 MSDS를 제공받아 취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영업자의 책무)는 유독물영업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영업자의 책무 내용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회수, 교육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자체실정에 맞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오니 처리방법

Q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를 현재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으나 소각로 건조로 시설을 가지고 하수오니 건조를 하는 중간 처리업체로 변경 처리코져 합니다.

위의 방법이 하수유기성오니 처리기준에 합법 한지요.

위의 중간처리 업체는 건조후 매립지 복토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합법한지요.

A

1일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는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하여 매립지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된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

Q

질문1) 하수처리구역내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된 건축물이 증축 및 용도변경등으로 오수량 10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질문2) 질문1의 답변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추가질문입니다.

기존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60톤이고, 건물의 오수발생량이 증가분을 포함하여 60톤 미만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A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기술사

Q

저희가 급번 수질방지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수질관리기술사중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술사 등이 있는데 1976년도 공업화학기사 자격을 취득후 수질쪽에 계속업무를 해왔습니다.

공업화학기사의 경력이 20년이 넘어 수질관리기술사 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화공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기계공정설계기술사·공학박사(수질분야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오염방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나 문의하신 공업화학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을 가진 자는 기술사 대체인력

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가능여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전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분법 시행시)를 하였는데 하수도법 통합·개성이후 현재 지금은 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가 되어 하수처리구역 내 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될 경우 당초에 신고한 오수처리시설을 변경할 경우 오수처리시설로 변경설치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화조로 변경설치신고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오분법에 의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은 영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화조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화조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GR



GR(Good Recycled)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골재 선별과정중 발생되는 사업장계 일반 폐기물(무기성 오니)를 별도에 절차 및 시설 없이 외부 업체에서 받아 재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다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아닌지요?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시 수분 함량을 감추기 위해 적환장을 설치 자연 건조가 가능 한지 또한 토사와 5대5혼합시 굴삭기로만 혼합하는 것도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GR(Good Recycled)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로서 관할지자체로부터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폐기물로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신고 및 시설없이 재활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재협의 대상여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평가서에는 공사를 시행하면 인근 지역에 환경영향(대기, 소음, 오수발생량)을 예측하고자 대기/소음은 가동장비수, 오수발생량은 건설인력수등에 가정조건을 두고 환경영향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공사중 예측 가정조건과는 달리 장비수 또는 건설인력수가 증가하여 공사중에 있고 지역주변 환경질은 측정한 경과 환경기준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평가서의 재협의 등)에의거 재협의 대상인지, 제24조(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A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가동장비수, 건설인력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가동장비수, 건설인력수 등의 변경시 협의기관장과 반드시 협의 토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MOCA의 유해물질규제

Q

우레탄 방수재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인 MOCA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화학명으로는 4,4'-Methylene bis(2-chloroaniline)이며 발암성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관리법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언제부터 규제가 되는지 혹은 규제하실 예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A

“4,4' -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는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질은 아닙니다.

다만, 동 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98-1-479)”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등록 후 영업하여야 합니다.

TMS관련 질의

Q

당사는 열병합발전시설이 있는 대기2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입니다.

현재 대기신고필증은 있는 상태이고 가동개시신고는 차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지시설설치면제시설인 열병합발전시설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해도 TMS 설치 대상 시설인지 문의 드립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설치면제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